

의안번호	제13호
의결 년월일	2026. 2. 4. (제334회)

제3차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보고

제출자	금산군수
제출년월일	2026. 1. 23.

제3차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보고

의안번호	제13호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1. 23.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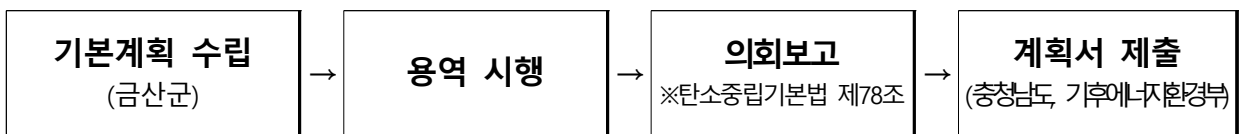
1. 제안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임

2. 주요내용

- 계획 주요 내용
 - 제2차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(2021~2025) 종합평가
 - 제3차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

- 계획 수립 절차



3. 참고사항

-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

관 계 법 령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40조(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(이하 “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8조(국회 보고 등)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·도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